

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

2014. 11. 21. 제정

2016. 5. 13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「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」 및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·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장비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한다.

1. 단독활용장비의 판정 및 해제
2. 공동활용서비스장비의 선정 및 해제
3.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의 저활용·유휴·불용장비의 판정. 자산 이관 및 처리
4. 장비특성, 활용기간,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(구매/개발/임대) 검토 및 결정
5. 단가 3천만원 이상의 고가장비 구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결정(다만, 순수연구개발사업 및 시설장비구축사업으로 구축하는 장비는 자체 심의대상에서 제외) <신설 2016.5.13.>
6. 기타 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개정 2016.5.13.>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본교 교수 또는 교외인사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외위원을 총 위원수의 100분의 30 내외로 한다.

- ② 산학협력단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때에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산학협력단 부단장으로 한다.

제4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심의 및 조정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.
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5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6조(기타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, 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」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연구장비심의위원회 규정

부칙 <2014. 11. 21. 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16. 5. 13. 개정>

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